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52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6월 5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#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완·강화하고,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권리를 보호하며,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수정함(안 제5조)
- 나.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의2)
- 다.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 ~ 안 제13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명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4년마다 동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”를 “5년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발달장애”를 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”로, “확충”을 “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·지원에 관한 사항
- 6.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.

제7조제1항제5호 중 “거주시설, 주간활동”을 “거주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

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- 6.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
- 7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
- 8.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
- 9.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

제8조의 제목“(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)”를“(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서울시 동작구 장애”를 “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”로, “에서 심의한다”를 “를 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중 “위원장이”를 “구청장이 필요하다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복지단체의 보호·육성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복지시설 확충 등)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,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의 제목 “(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·운영 등)”을 “(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
2.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
3.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
4.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
5.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

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평생교육센터 지정)”을 “(평생교육센터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(이하 “평생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,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,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, 교육과정의 규모, 특수교육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·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-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의 제목 “(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)”을 “(평생교육센터의 업무)”로 한다.

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

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,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.

③ 평생교육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<u>4년마다 동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6. <u>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5년마다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·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8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----- 운영 -----</u></p>

8.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 
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<신 설>

③ (생 략)

<신 설>

제7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
5.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, 주간활동, 돌봄지원
6. 법 제30조 및 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

<신 설>

-----  
<삭 제>

9.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 
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 
거주시설-----
6.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
7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



<신 설>

<신 설>

7. 8.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”를 따른다.

제8조(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 동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로 본다.

1. (생 략)
2.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<신 설>

대한 정보제공과 교육

8.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

9.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

10. 11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-----.

제8조(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-----를 둔다. <후단 삭제>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----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-----  
--

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

제9조(복지시설의 확충 및 단체의 보호·육성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종합 지원센터(이하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2.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3.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에서 대행할 수 있다.

제9조(복지단체의 보호·육성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복지시설 확충 등)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,

제10조(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·운영 등) 구청장은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·운영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 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
2.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

<신 설>

제11조(평생교육센터 지정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3.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

4.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

5.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

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평생교육센터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(이하 “평생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,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.

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 강좌 과목,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, 교육과정의 규모, 특수교육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2조 (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제13조 ~ 제17조 (생략)

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·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⑤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평생교육센터의 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)

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,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.

③ 평생교육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 ~ 제18조 (현행 제13조부터

제17조까지와 같음)